

◎ 특허청공고 제2025-208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특허청장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 이전청구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출원인 불편을 해소하고자 삭제되는 부분디자인 항목에 대한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을 정비하며, 발명의 실시 유형으로 추가된 ‘수출’을 기재요령 예시로 추가하고, 국제 디자인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 등록번호로 규정된 부분을 ‘국제’ 등록번호로 정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산업재산등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 4동 1605호(우 35208)
- 전자우편 : sophyai13@korea.kr
- 팩스 : 042-472-346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산업재산등록과(042-481-52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